

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4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2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개정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 기관명칭 및 지원본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현행화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기관명칭 변경(제3조제2항제7호)
나.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 변경(제5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기간 : 2023.11.22. ~ 2023.12.15.(23일간)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

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통합방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”를 “「통합방위법」 제5조”로, “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및 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”를 “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”를 “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 중 “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”을 “제1항제2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3호 규정과 관련한” 을 “제1항제3호에 따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한” 을 “제1항제6호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사기양양 및 홍보,” 를 “사기양양, 홍보 및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 중 “하남시 관할담당 군사 안보지원대장” 을 “하남시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작전장교” 를 “정작(동원)과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통합방위” 를 “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 라 한다)를 두고,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 을 “안전환경국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” 을 “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14조 및 제15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관계자로 하되, 동 지원반은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 중 1명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방위 지원본부” 를 “지원본부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안전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안전정책과장 염규진
	팀장 직위·성명	안전기획팀장 이희중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헌구 031-790-5120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통합방위법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<u>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</u>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및 <u>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</u>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조의2(협의회의 통합·운영) <u>법</u>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 3의 <u>규정에 의한 지원대책</u></p> <p>7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하남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통합방위법</u>」 제5조 ----- ----- <u>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</u> 및 <u>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조의2(협의회의 통합·운영) 「<u>통합방위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<u>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</u>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① --- ----- 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에 <u>따른 지원대책</u></p> <p>7. -----<u>제7조에 따른</u>----- ----- ---</p>

8. (생 략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~ 3. (생 략)

③ 제1항제3호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 략)

④ 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~ 4. (생 략)

5. 예비군 사기양양 및 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

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

1. ~ 6. (생 략)

7. 하남시 관할담당 군사 안보 지원대장

8. ~ 11. (생 략)

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

8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제3호에 따른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제6호에 따른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 사기양양, 홍보 및 ----

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하남시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
8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작전 및 예비군담당간사 :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작전장교

3. ~ 5. (생략)

④ (생략)

제5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

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과 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·운영하되 본부장은 시의 경우 부시장이, 동의 경우 동장이 된다.

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장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·통제한다. , ,

③ (생략)

④ 법 제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원본부 내에 군·경 합동상황실 구성하며, 상황실장은 관할 군부대 관계참모 또는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정작(동원)과장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

① -----

----- 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,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안전환경국장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4조 및 제15조-----

관할지역 경찰서의 과장급으로 한다.

⑤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관계자로 하되, 동 지원반은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 중 1명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5조의2(지원본부의 사무) 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⑤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관계자로 하되, 동 지원반은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 중 1명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지원본부의 사무) ① 지원본부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